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삼석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062

발의연월일 : 2024. 7. 22.

발 의 자:서삼석·박희승·임호선

윤준병 · 송옥주 · 복기왕

이병진 • 박수현 • 위성곤

박지원 • 정준호 • 문대림

김영진 · 김문수 · 안도걸

강선우 • 조계원 • 이원택

신영대 · 이개호 의원

(2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부가 예산의 범위에서 농어업재해보험의 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는 재정여건에따라 보험료의 일부를 추가로 지원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기후위기로 인해 빈번하게 풍수, 냉해, 태풍, 홍수, 가뭄 등 자연재해가 빈번하게 발생하여 농어업인의 피해가 가중되고 있지만, 영세한 농어업인의 경우 경제적 부담으로 인해 보험 가입을 우려함에 따라 가입률은 매년 저조한 실정으로 보험료에 대한 지원을 늘릴 필요가 있음.

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세한 농어업인 등에 대해서는 보험료

의 100분의 80 이상을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영세한 농어업인의 보험 가입률을 제고하고 나아가 안정적인 농어업경영을 할 수 있도록 여건 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19조제2항 신설).

법률 제 호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지원 절차"를 "지원 절차와 제2항에 따른 보험료의 지원 방법 및 절차"로 한다.

- ② 정부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재해보험가입자 또는 전년도 농어업재해로 인한 피해액이 대통령령으로 규정한 금액 보다 많은 재해보험가입자에게 보험료의 100분의 80 이상을 지원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해보험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추가로 지원할 수있다.
- 1. 재해보험가입자의 농어업 형태나 농어업 전체의 경영규모가 대통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에 해당할 것
- 2. 농어업경영을 통한 신청연도의 직전년도 기준 생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이거나 1년 중 60일 이상 농어업에 종사할 것
- 3. 농어촌에 거주해야 할 것

4. 직전년도 기준 농어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일 것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9조(재정지원) ① (생 략)	제19조(재정지원) ① (현행과 같		
	음)		
<u><신 설></u>	② 정부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		
	족하는 재해보험가입자 또는		
	전년도 농어업재해로 인한 피		
	해액이 대통령령으로 규정한		
	금액 보다 많은 재해보험가입		
	<u>자에게 보험료의 100분의 80</u>		
	이상을 지원하여야 한다. 이 경		
	우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		
	위에서 재해보험가입자가 부담		
	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1. 재해보험가입자의 농어업 형		
	태나 농어업 전체의 경영규모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에 해당할 것		
	2. 농어업경영을 통한 신청연도		
	의 직전년도 기준 생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이거나 1년		
	중 60일 이상 농어업에 종사		

<u>②</u>·<u>③</u> (생 략)

④ 제1항에 따른 보험료와 운영비의 지원 방법 및 지원 절
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u>알 久</u>	
3. 농어촌에 거주히	해야 할 것
4. 직전년도 기준	농어업 외 종
합소득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민	<u></u> 반일 것
<u>③·④</u> (현행 제3	 항 및 제4항
과 같음)	

<u>(5)</u> –					
				지원	절
<u> 차와</u>	제2호	항에	따른	보험료	로의
지원	방법	및	절차 -		